

제292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92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진 도 군



1. 제292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목록 1부.
2. 제292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각 1부.

목 차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담당부서	비고
2023-117	진도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기 획 홍 보 실	
2023-118	진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 획 홍 보 실	
2023-119	진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홍 보 실	
2023-120	진도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총 무 과	
2023-121	진도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세 무 회 계 과	
2023-122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 원 봉 사 과	
2023-123	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 원 봉 사 과	
2023-124	진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 민 복 지 과	
2023-125	진도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족 행 복 과	
2023-126	진도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 경 수 질 과	
2023-127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 업 지 원 과	
2023-12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세 무 회 계 과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담당부서	비고
2023-129	2024년도 예산안	기 획 홍 보 실	
2023-130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인 구 정 책 실	
2023-131	제5기 진도군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주 민 복 지 과	

진도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3-117
----------	----------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일 '22. 8. 10.)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관련 공문 : 전라남도 정책기획관-3278(2023.03.24.)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 범위 등(안 제1조~제3조)
 - (목적) 진도군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도 제고
 - (정의) “공모전”이란 진도군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
 - (적용제외)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유아 또는 학생 대상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시상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공모전
-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공모전 시행 시 공모전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
 - 공모전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공모담당관으로 지정
- 공모전의 공고·응모 절차(안 제5조~제6조)
 - 공모전 시행 시,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 의무
 - 다양한 응모 방법 제공(방문, 우편, 전자우편, 군 인터넷 누리집 등)

○ 공모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제8조)

- 공모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의 제척, 기피, 해임, 해촉 관련 사항 규정

○ 공모전 심사절차(안 제9조)

- 부정행위 검증, 수상후보작 선정 및 공개 검증, 수상작결정 등 규정

○ 수상작의 공개·취소(안 제10조~제11조)

- 수상작 공개 절차(「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에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
- 부정행위 적발 시 수상작 결정 취소 절차 규정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 2023. 10. 11. ~ 10. 31.(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검토의견 통보서, 반영계획서)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11. 9. 원안의결

진도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전”이란 진도군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
2. “응모”란 진도군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모전에 참여하여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다.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라.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

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부당한 중복응모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군청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3. 상장을 수여하지 않고,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공모전 공고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인 공모전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공모전의 필요성과 다른 공모전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전의 분야·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 상장·상금·상품 등 시상 내용
5.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개 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7. 제10조에 따른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상금·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0. 그 밖에 군수가 공모전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공모전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공모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공모전의 공고)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응모)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응모자에게 제4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모전의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응모작의 심사 및 수상후보작의 선정
2.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3. 수상작의 결정
4. 수상후보작 및 수상작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5. 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한 심사위원회의 경우와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공모전 공고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공모전인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양성평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심사) ① 군수는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한정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후보작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 외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심사 등 국민참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대해서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10일 이상 공개하고 부정행위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응모작이 응모 자격, 심사 기준 등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수상작의 공개) ① 군수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상금·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상금·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응모자가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고되는 공모전부터 적용한다.

진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18
----------	----------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을 포함하여 군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제안 제출 가능 규정 명시(안 제1조, 제3조의 제1항)
 - 진도군민으로 한정되어 있는 제안 자격을 진도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로 확대하여 누구나 진도군에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모제안의 정의 및 관련 항목 삭제(안 제3조의 제6항)
 - 제안을 공모하는 경우 공모전 조례를 따르도록 함(별도 조례 제정)
- 진도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정비(안 제7조~제7조의5)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
 - 제안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운영 사항 등 정비
- 진도군 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변경(안 제8조)
 - 실무심사위원회를 관계부서에 한하지 않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등 심의사항 변경
- 부상 지급기준 정비(안 제17조)
 - 각 등급 부상금 '미만'을 각각 '이하'로 조정(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 「진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인사상 특전부여 실적가점 통일 (안 별표1)
 - 「진도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과 동일하게 실적 가점 통일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 「진도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 2023. 10. 11. ~ 10. 31.(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검토의견 통보서)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11. 9. 원안의결

진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제안"이라 함은 진도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무원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 학습동아리 성과물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군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② "군정제안"이라 함은 진도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가 군정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군수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③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④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군정시책이나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⑤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실제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⑥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6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안업무 주관 부서장

2. 진도군 소속 사무관 이상 공무원

3. 진도군의회 의원

4. 그 밖에 군정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무심사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제안의 심사·확정 및 창안등급의 결정

2. 실무심사위원회로부터 상정된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의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및 상여금 지급액 결정

6. 자체 우수제안의 결정

7. 기타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안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실무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안 심사를 위하여 진도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기획, 예산, 행정, 농수축산, 문화관광, 보건복지, 지역개발,

환경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며,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진도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1. 제안 사항의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2. 불채택 제안 중 군정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안의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3. 제11조제2항 또는 제11조제3항의 재심 청구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4. 기타 제안에 관련된 사항 심의

제9조(수당)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등)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제안의 등급) ① 군수는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우수제안으로 결정한다.

② 우수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및 상급기관 표창계획에 따른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창안자에 대한 군수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진도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6조(인사상 특전) 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 금상 : 특별승급

2. 은상 및 동상 : 희망부서 전보

②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이를 연봉 또는 성과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한 명단을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 하여야 한다.

제17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 상 :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2. 은 상 :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동 상 : 50만원 이상 70만원 이하
4. 장려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5. 노력상 :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와 채택은 되었으나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자에게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8조(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세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0조(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권리의 승계) 군수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된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23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도군민 제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6조제1항관련)

창안등급	인사특전	실적가점	비고
금상	특별승급 1호봉	0.2	
은상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0.15	
동상			
장려상		0.1	
노력상			

비고

1. 2인의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도 주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부제안자는 주제안자의 1/2점을 부여한다.
2. 3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 및 실적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진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19
----------	----------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군정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홍보대사의 임기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임기 관련 조문 개정(안 제5조)
 -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함

3. 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10. 18. ~ 11. 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11. 9.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는 경우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기)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 으로 <u>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는 경우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u>	제5조(임기)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 으로 <u>한다.</u>

진도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3-120
----------	----------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효율이 낮은 위원회의 근거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비상설화 위원회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최근 3년간 회의 미개최 및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비효율적인 각종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기 위해 근거 조문 개정 및 신설 (안 제1조 ~ 제13조)
 -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는 조항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10. 18. ~ 11. 7.(20일간)/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분석평가서 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11. 10. 원안의결

진도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진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진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 중이라도 해촉”을 “해촉”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2조(「진도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도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3조(「진도군 갯벌습지보호구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도군 갯벌습지보호구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진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진도군 재난 및 안전관

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5조(「진도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의 개정) 진도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도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6조(「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7조(「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당연직으로 하고, 제8호및제9호는 위촉직으로 하며,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8조(「진도군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진도군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진도군계획 조례」의 개정)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0조(「진도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도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1조(「진도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진도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2조(「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3조(「진도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도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진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 <u>촉직 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 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p> <p>② <u>당연직 위원</u>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임기 중이라도 해촉</u>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 <u>원회</u>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 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 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③ ----- ----- ----- <u>해촉</u> ----- -----.</p> <p>1. ~ 4. (현행과 같음)</p>

제2조(「진도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 <u>원의 임기</u>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p> <p>② <u>보궐된 위원</u>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3조(임기) <u>위원회</u>는 안건이 발 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u>자동해산</u>한다.</p>

제3조(「진도군 갯벌습지보호구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임기)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진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 ④ (생략) <신설>	제1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5조(「진도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6조(「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의 임기) ① <u>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② <u>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③ <u>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u></p> <p>④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p>	<p>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u>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u></p>

제7조(「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구성 및 임기) ①·② (생략)</p> <p>③ <u>위원의 임기는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당연직으로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8호 및 제9호는 위촉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u></p>	<p>제18조(구성 및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당연직으로 하고, 제8호및제9호는 위촉직으로 하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u></p>

제8조(「진도군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의 임기) <u>당연직 위원</u> <u>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u> <u>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u> <u>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u> <u>임할 수 있다.</u>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 <u>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u> <u>의결 후 자동해산한다.</u>

제9조(「진도군계획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2조(구성)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72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 음) <u>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u> <u>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u> <u>산한다.</u>

제10조(「진도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⑥ (생략) <u>⑦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u> <u>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⑧ ~ ⑩ (생략)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⑥ (현 행과 같음) <u>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u> <u>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u> <u>산한다.</u>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1조(「진도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2조(「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3조(「진도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 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진도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3-121
----------	----------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 진 도 군 수

1. 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관리와 우리 군 미래 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향후 개발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공공시설용지”란 다음 각 사항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및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래 필요한 토지
 - 새로운 개발사업 등으로 공공용지로 활용할 예정지
 -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공공시설용지의 확보(안 제3조)
 - 공공사업 등 개발사업에 활용하거나 장래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실제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매입
 - 공공시설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본인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요청 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
- 토지매각신청(안 제4조)
 - 토지를 군수에게 매각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토지매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 토지매입절차(안 제5조)
 - 군수는 매각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입 우선순위를 결정
 - 현장 및 서류 확인 등을 거쳐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

- 매입이 가능한 토지는 사업추진 부서를 결정하여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입 여부를 최종 확정
- 매입이 확정된 토지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

○ 활용계획의 수립(안 제6조)

- 토지를 매입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

○ 처분 등의 제한(안 제7조)

-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부터 3년 이내 처분 제한

3. 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결과 : 2023. 10. 18 . ~ 11. 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11. 10. 원안의결

진도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진도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 미래 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향후 개발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우선적으로 매입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용지”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래 필요한 토지

다. 새로운 개발사업 등으로 공공용지로 활용할 예정지

라. 공유재산으로 집단화하여 재산적 가치 증대가 필요한 토지

마.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지로서 비축용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

바.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2. “확보”란 공공시설용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활용”이란 취득한 토지를 적합한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용지의 확보) ① 군수는 공공사업 등 개발사업에 활용하거나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실제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본인의 토지를 군수에게 매각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제4조(토지매각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라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군수에게 매각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토지매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토지매입 절차)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매입 및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진도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할 것
2.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련 부서로 하여금 현장 및 서류 확인 등을 거쳐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입이 가능한 토지는 사업추진 부서를 결정하여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입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매입이 확정된 토지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다.

제6조(활용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5조제4항에 따라 토지를 매입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처분 등의 제한) 제5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3.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공시설용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22
----------	----------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마을복지회관 지원 대상인 보조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조사업자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2조)
 - 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마을 및 마을노인회”로 정함.
-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조정(안 제8조)
 - 보조금을 받은 경우 3년간 보수비 지원을 제한하였으나, “동일 공정의 경우”로 한정함.
- 마을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지원기준 조정(안 별표)
 - 조달청 고시 “시설물 유형별 공사비”를 기준으로 함.

3.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해당없음

5. 관련부서 의견: 의견 없음

6. 입법예고 사항: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 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 사유서)*

9. 참고사항: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11. 3. 원안의결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마을”이란 「진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의 행정리를 말하며, “마을노인회”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에 해당되는 자로 구성된 행정리의 노인단체를 말한다.

11. “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마을 및 마을노인회를 말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마을회”를 “보조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마을(회)명의”를 “보조사업자 명의”로, “못한 경우에는”을 “못하는 경우에 해당 될 때는”으로, “마을(회) 소유”를 “보조사업자 소유”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마을(회)에서”를 “보조사업자가”로, 같은 조 제3항 중 “마을회”를 “보조사업자”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마을회”를 “보조사업자”로 한다.

3. 보수 중 동일 공정의 경우에는 3년간(사업비가 과다하여 연차별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제1항 중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를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을회에서”를 “보조사업

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마을회에서”를 “보조사업자가”로 한다.

별표의 신축의 70호 미만, 71호 이상의 지원 한도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달청 고시 “시설물 유형별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구분	마을규모	기준 건축면적	지원 한도액	자부담
신축	70호 미만	85㎡ 이하	조달청 고시 “시설물 유형별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 등
	71호 이상	100㎡ 이하		
증축 및 리모델링	100백만원 이하			
보수	50백만원 이하			

별표의 증축 및 리모델링의 마을규모란 중 “80백만원”을 “100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보수의 마을규모란 중 “30백만원”을 “50백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9. (생략)</p> <p>10.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복지회관 등의 신축(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p> <p><u><신 설></u></p> <p>제3조(지원조건 등) ① (생략)</p> <p>② 마을복지회관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이登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마을복지회관 등의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p>	<p>제2조(정의)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마을”이란 「진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의 행정리를 말하며, “마을노인회”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에 해당되는 자로 구성된 행정리의 노인단체를 말한다.</p> <p>11. “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마을 및 마을노인회를 말한다.</p> <p>제3조(지원조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보조사업자----- ----- ---- <u>보조사업자 명</u>----- ----- 못하는 경우에 해당 될 때는 ----- -----</p>

사업 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한다.

③·④ (생략)

제7조(지원기준 등) ① 마을복지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별표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은 마을(회)에서 부담한다.

② (생략)

③ 설계용역비와 기존 마을복지회관의 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회 자담으로 한다.

제8조(지원의 제한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보조금지급 완료일로부터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2. (생략)

3.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보수비를 지원 받은 후 신축(재건축 포함)을 할 경우에는 지원 받은 보조금이 공사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5년간

② 마을회 소유의 지원시설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가 수

----- 보조사업자 소유-----.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기준 등) ① -----

----- 보조사업자가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보조사업자 -----.

제8조(지원의 제한 등) ① -----

1. 2. (현행과 같음)

3. 보수 중 동일 공정의 경우에는 3년간(사업비가 과다하여 연차별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보조사업자 -----

반될 시 지장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부지매입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생략)

제12조(마을복지회관의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 등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복지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당은 제외한다.

[별표]

<마을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지원 기준>

구분	마을 규모	기준 건축면적	지원 한도액	마을회 자부담
신축	70호 미만	85㎡ 이하	150백만원 이하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 등
	71호 이상	100㎡ 이하	200백만원 이하	
증축 및 리모델링			80백만원 이하	
보수			30백만원 이하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마을복지회관의 관리)

① -----

 -----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쳐야 -----

② 보조사업자-----

③ -----
 ----- 보조사업자가 -----

[별표]

<마을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지원 기준>

구분	마을 규모	기준 건축면적	지원 한도액	자부담
신축	70호 미만	85㎡ 이하	조달청 고시 “시설물 유형별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 등
	71호 이상	100㎡ 이하		
증축 및 리모델링			100백만원 이하	
보수			50백만원 이하	

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23
----------	----------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당연직 대상, 임기 기준 마련(안 제6조)
 -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호선, 위원회 임기는 3년(1회 연임)
-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대상 개정(안 제21조)
 - 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로 된 것을 포함하고 간이 작업장을 추가함.
 - 「산지관리법시행령」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및 대피소 추가함.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안 제36조)
 - 주거지역 건축물 신축시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의 높이를 9미터 이하에서 10미터 이하로 완화함.
- 공작물을 축조할 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 중 제조시설, 저장시설은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함.(안 제39조)

3.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건축법」

5. 관련부서 의견: 의견 없음

6. 입법예고 사항: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 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 사유서)*

9. 참고사항: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11. 3. 원안의결

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과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은 민원봉사과장, 안전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체육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환경수질과장, 산림휴양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호 중 “연면적 30제곱미터”을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로, 제11호 중 “간이저온저장고”를 “간이저온저장고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및 대피소”로 한다.

3.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로 된 것을 포함한다) 재질로 된 것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기

타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및 간이 작업장

제36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중 “높이 9미터”를 “높이 10미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중 “높이 6미터”를 “높이 6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건축위원회의 구성)</p> <p>①(생략)</p> <p>② <u>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p><u><신설></u></p> <p>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p> <p>①~②(생략)</p> <p>③ <u>협의회에 민원인이 참석하게 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u></p> <p>제21조(가설건축물)</p> <p>①~②(생략)</p> <p>③ <u>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u></p> <p>1.~ 2.(생략)</p> <p>3. <u>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천막구조의 창고</u></p>	<p>제6조(건축위원회의 구성)</p> <p>①(생략)</p> <p>② <u>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은 민원봉사과장, 안전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체육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환경수질과장, 산림휴양과장으로 한다.</u></p> <p>③ <u>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u></p> <p>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p> <p>①~②(생략)</p> <p>③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p>제21조(가설건축물)</p> <p>①~②(생략)</p> <p>③ ----- ----- ----- ----- -----</p> <p>1.~ 2.(현황과 같음)</p> <p>3. <u>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로 된 것을 포함한다)재질로</u></p>

또는 기타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천막구조의 창고

4.~ 9.(생략)

10.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이동이 가능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 구조의 가설점포 및 가설음식점

11.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5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

된 것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기타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및 간이작업장

4.~ 9.(현행과 같음)

10. -----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11. -----
----- 간이저온저장고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및 대피소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1. 높이 10미터 -----

2. 높이 10미터 -----

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⑤(생략)

제39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 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⑤(현행과 같음)

제39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

-----.

1. -----
-----높이 6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

2. -----높이 6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

진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24
----------	----------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진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 (안 제7조)
 - (당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변경)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10. 11. ~ 10. 31.(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11. 7. 원안의결

진도군조례 제 호

진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7조(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 ----- ----

진도군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25
----------	----------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진도군 유스호스텔의 시설사용료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개정된 상위법 적용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4조)
 - ~에 의한, ~에 의하여, ~이, 휴대한 ⇨ ~에 따른/~에 따라/~에서/~지
 년
- [별표 1] 진도군 유스호스텔 이용요금 변경
 - 객실 사용료 현실화
 - 다목적실 및 대강당 사용료 현실화
 - 식대 부문 삭제 및 다목적 식당 사용료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10. 18. ~ 11. 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11. 10. 원안의결

진도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에서”로 한다.

제6조2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5항 중 “허가없이”를 “허가 없이”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휴대한 자”를 “지닌 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진도군 유스호스텔 이용요금

(단위 : 원)

구 분		청 소 년			일 반 인		
		관리동 (2인실)	숙 박 동		관리동 (2인실)	숙 박 동	
			8인실	2인실		8인실	2인실
객 실	비수기	50,000	90,000	30,000	70,000	120,000	50,000
사용료	성수기	60,000	120,000	40,000	90,000	150,000	70,000
다목적실 (소강당)		40,000원/시간당					
대 강 당		70,000원/시간당					
다 목 적 식 당		20,000원/2시간 기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20명 이상)는 10% 할인(객실 사용료에 한함) ◦ 기준 정원 초과시 1명당 10,000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별요금 이용자에 해당) ◦ 1박은 당일 15:00~다음날 12:00까지 한다. (초과시는 1박으로 간주) ◦ 성수기는 1년 중 7월 15일에서 8월 31일까지를,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u>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u>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u></p> <p>제6조(유스호스텔 운동참여)</p> <p>① 생략</p> <p>② 유스호스텔의 심벌마크는 진도군을 상징하는 CI등 심벌마크를 사용하되, <u>제5조의 규정에 의한</u>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심벌마크를 동시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12조(사용허가)</p>	<p>제1조(목적)-----<u>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u> -----</p> <p>-----</p> <p>-----</p> <p>-----</p> <p>-----</p> <p>-----</p> <p>제3조(정의)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p> <p>-----</p> <p><u>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u></p> <p>제6조(유스호스텔 운동참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 <u>제5조의 규정에 따른</u> -----</p> <p>-----</p> <p>-----.</p> <p>제12조(사용허가)</p>

① ~ ④ 생략

⑤ 여행 및 관광하는 청소년의 단체가 숙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일 숙박일의 여유가 있거나 야영을 할 경우에 허가없이 사용료만 납부하면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생략)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 6. (생략)

[별표1] 진도군 유스호스텔 이용요금
(단위 : 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허가 없이 -----
-----.

제14조(사용의 제한) -----

-.

1. 현행과 같음
2. -----
-----지닌 자
3. ~ 6. 현행과 같음

[별표1] 진도군 유스호스텔 이용요금
(단위 : 원)

구 분	청 소 년			일 반 인		
	관리동	숙박동		관리동	숙박동	
	2인실	8인실	2인실	2인실	8인실	2인실
객 실 사용료	30,000	40,000	20,000	40,000	50,000	30,000
식 대 (1인1식)	3,000			4,000		
다목적실	○ 2시간 이하 : 40,000			○ 2시간 이하 : 40,000		
	○ 2시간 초과 1일 이내 : 30,000			○ 2시간 초과 1일 이내 : 30,000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는 10% 할인(객실사용료에 한함) ○ 1박은 당일 15:00 ~ 다음날 12:00까지 한다 (초과시는 1박으로 간주) ※ 식대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식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청 소 년			일 반 인			
	관리동	숙박동		관리동	숙박동		
	2인실	8인실	2인실	2인실	8인실	2인실	
객 실 사용료	비 수 기	50,000	90,000	30,000	70,000	120,000	50,000
		성 수 기	60,000	120,000	40,000	90,000	150,000
다목적실	40,000원/시간당						
대 강 당	70,000원/시간당						
식 당	20,000원 / 2시간 기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20명이상)는 10% 할인(객실사용료에 한함) ○ 기준 정원 초과시 1명당 10,000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개별요금 이용자에게 해당) ○ 1박은 당일 15:00~다음날 12:00까지 한다. (초과시는 1박으로 간주) ○ 성수기는 1년 중 7월 15일~ 8월 31일,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진도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26
----------	----------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운영 중인 특별회계 명칭과 조례 명칭이 상이함에 따라 명칭 통일
일을 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며,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진도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를 “진도군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설치 조례” 로 변경
- 안 3조(존속기한)
 - 특별회계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을 “2028년 12월 31일” 로 변
경

3. 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9. 27. ~ 10. 1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11. 7. 원안의결

진도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도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진도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진도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u></p> <p>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 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진도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u></p> <p>제3조(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p>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27
----------	----------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19조(존속기한)에 명시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기한 연장을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
-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항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 명칭에 변경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 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존속기한 변경(연장)
 - (당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변경)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 제3항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 명칭 변경
 - (당초)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
 - (변경) 「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
 -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조항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6. 입법예고 결과 : 2023.10.19. ~ 11.8.(20일간) / 제출 의견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11. 13. 원안의결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6조 제3항 중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9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② (생략)</p> <p><u><신 설></u></p> <p>③ (생략)</p>	<p>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 (생략)</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기금의 출납관리는 「<u>진도군 재무회계 규칙</u>」을 준용한다.</p>	<p>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p>제1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p>	<p>제19조(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 -----.</p>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23-128
----------	----------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에

매입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진도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활용 예정재산 부지 매입 추진

3. 세부 내역 : 첨부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5	3,805	1,820,000				5	3,805	1,820,00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천원)

(단위 : m²,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 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전	진도읍 동외리 1151-1	1,005	1,450,000	2024.1.	공공활용 예정재산	
2	잡	진도읍 동외리 1151-17	980				
3	전	진도읍 동외리 1151-18	263				
4	전	진도읍 교동리 159	1,402	370,000			
5	답	진도읍 교동리 160	155				

|| 목 차 ||

안건 번호	제 목	안 건 요 지	제안부서
1	공공활용 예정재산 부지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진도읍 동외리 1151-1 외 2필지 진도읍 교동리 159 외 1필지 - 면 적 : 토지 3,805㎡ - 대장가액(감정) : 1,820,000천 원 - 소유자 : 정O훈, 이O순 - 목 적 : 공공활용 예정재산 부지 매입 (공공사업 예정부지, 부설주차장 부지)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

공공활용 예정재산 부지 매입

1. 제안이유

- 우리 군 미래 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향후 개발에 필요한 공공활용 예정재산을 매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사항

구분	위 치	지목	면적(㎡)	재산가액(천원) (가감정)	활용방안	비고
	위 치		3,805	1,820,000		
토지	동외리 1151-1 외 2필지	전,잡	2,248	1,450,000	공공시설용지 (공모사업)	
	교동리 159 외 1필지	전,답	1,557	370,000	군 청사 부설주차장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4. 주관과 의견

- 공공사업 등 개발사업에 활용하고 미래 군 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활용 예정재산을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 치 도(진도읍 동외리 1151-1 외 2필지)



현장사진



||

위 치 도(진도읍 교동리 159 외 1필지)



|| - |

현장사진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구분	제 목	신 청 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3-14호	공공활용 예정재산 부지 매입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	- 위 치 : 진도읍 동외리 1151-1 외 2필지 진도읍 교동리 159 외 1필지 - 면 적 : 토지 3,805㎡ - 대장가액(감정) : 1,820,000천원 - 소유자 : 정O훈, 이O순 - 목 적 : 공공활용 예정재산 부지 매입 (공공사업 예정부지 부설주차장 부지)	가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3. 11. 7.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부(否)일 경우 사 유
			가(可)	부(否)	
1	위 원 장	우 흥 섭	의결		
2	부 위 원 장	박 정 현	박정현		
3	위 원	정 기 문	정기문		
4	위 원	이 미 예			
5	위 원	정 동 조	정동조		
6	위 원	이 재 식	이재식		
7	위 원	이 애 순	이애순		
8	위 원	이 상 립	이상립		

2024년도 예산안

의안 번호	2023-129
----------	----------

제출년월일: 2023. 11.

제출자: 진도군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코자 함.

주요골자

- 2024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A)	2023년도 (B)	증감 (A-B)	
				%
합계	421,904,707	460,770,939	△38,866,232	△8.44
일반회계	412,240,000	451,049,639	△38,809,639	△8.60
특별회계	9,664,707	9,721,300	△56,593	△0.58

의안내용 : 첨부

【첨부】

2024년도 예산안 총괄조서

□ 세 입

(단위: 천원)

회 계 별	요 구 내 역				심의결과 증 감 액	비 고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		
합 계	421,904,707	460,770,939	△38,866,232	△8.44	-	
일반회계	412,240,000	451,049,639	△38,809,639	△8.60	-	
특별회계	9,664,707	9,721,300	△56,593	△0.58	-	

□ 세 출

(단위: 천원)

회 계 별	요 구 내 역			심 의 결 과		비 고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증감액	예비비 계상액		
합 계	421,904,707	460,770,939	△38,866,232	-	-		
일 반 회 계	412,240,000	451,049,639	△38,809,639	-	-		
특 별 회 계	9,664,707	9,721,300	△56,593	-	-		
특 별 회 계	소 계	9,664,707	9,721,300	△56,593	-	-	
	상 수 도	8,393,263	8,341,815	51,448	-	-	
	의료급여기금	667,244	775,285	△108,041	-	-	
	자 활 기 금	603,000	603,000	-	-	-	
	주 민 소 득 지 원 기 금	1,200	1,200	-	-	-	

□ 기금회계 (수입)

(단위: 천원)

회 계 별	요 구 내 역				심의결과 증 감 액	비 고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		
합 계	63,952,125	22,173,313	41,778,812	188.42	-	
기금회계	63,952,125	22,173,313	41,778,812	188.42	-	

□ 기금회계 (지출)

(단위: 천원)

회 계 별	요 구 내 역			심 의 결 과		비 고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증감액	예비비 계상액	
합 계	63,952,125	22,173,313	41,778,812	-	-	
농 수 산 물 가 격 안 정	8,488,165	8,725,556	△237,391	-	-	
폐기물 처리시설 주 변 지 역 주 민 지 원	70,456	58,426	12,030	-	-	
재 활 용 품 판 매 대 금 관 리	188,415	188,415	-	-	-	
재 난 관 리	2,115,103	1,985,106	129,997	-	-	
식 품 진 흥	50,613	84,948	△34,335	-	-	
문 화 진 흥	6,570,000	6,122,556	447,444	-	-	
통합재정안정화	44,217,288	4,008,294	40,208,994	-	-	
체 육 진 흥	1,500,335	1,000,012	500,323	-	-	
고 향 사 랑	751,750	-	751,750	-	-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의안 번호	2023-130
----------	----------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추진배경

-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성과창출 및 공동 발전방향 모색과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별도 협의회 구성·운영의 필요성 대두
-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 칭(제2조) :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 구 성(제3조) : 89개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 기 능(제5조)
 - 인구감소지역 발전 우수사례 발굴 및 추진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발굴 및 제도 개선
 - 인구감소지역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 기타 인구감소지역 간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등
- 조 직(제6조)
 - 임원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 * 부회장은 광역 자치단체별로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
 - 임원임기 : 1년(연임가능)

- 임원선출 :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 회의 및 의결(제9조)

-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연 1회
- 임시회는 회원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 실무협의회(제10조)

- 실무협의회장 : 협의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 부서장
- 실무협의회원 : 협의회 임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 부서장

○ 사무국(제13조)

- 협의회 의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한 사무국 운영
- 필요시 시·군·구에 공무원 파견 요청 가능

○ 부담금(제17조)

- 부담금은 총회에서 정하고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
-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에 따른 부담금은 필요시마다 협의하여 결정

3. 창립총회 개최 결과

○ 개최일시

- 일시·장소 : 2023. 9. 25.(월) 14:00 /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
- 참 여 : 68개 지역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
- 주요내용 : 창립총회 및 출범식 개최

○ 안전처리 결과

- 회칙제정 : 원안통과 * [붙임] 참조
- 임원선출 : 원안통과

• 협의회장(1): 충북 괴산군수 송인현

• 부 회 장(7): 인천 옹진군수 문경복, 경기 연천군수 김덕현, 강원 철원군수 이현종,
전북 순창군수 최영일, 전남 신안군수 박우량, 경북 고령군수 이남철,
경남 하동군수 하승철

- 부담금 결정 : 원안통과(부담금 : 5,000천원(균등부담), 2024년부터)
- 창립선언문 채택 : 원안통과 * [붙임] 참조

4. 향후 계획

-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의회 보고 및 고시·공고
-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급기관(시·도) 보고
- 협의회 대표지역 행정안전부 보고

※ 첨부 1. 관계법령 1부.

2.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및 창립선언문 각 1부.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가입 지방자치단체 현황 1부.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8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행정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행정협의회의 규약 사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2023. 9. 25.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교류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인구감소시대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①협회의 회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별지 제1호서식” 서식에 의한 참여동의서를 제출한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②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주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됨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자동소멸된다.

제4조(사무소) 협의회는 주된 사무소는 협의회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특례·교류 협력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유출에 대한 재정·세제·규제등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
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 사항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
사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개선사항
5.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고 국가-지방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및 건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6조(조직) ①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0명 이내,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부회장은 광역 자치단체별로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에 한해 1명씩 선출한다.

제7조(임원선임 및 임기) ①임원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3.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4.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②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별지 제2호서식” 서식에 의한 출석 및 표결 권한 위임장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심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④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행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광역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5조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거나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회원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④회원은 협의회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회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회원은 부담금을 소속 시·군·구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총회 등) ①협의회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협의회 회장은 연 1회 정기회를 소집한다.

②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원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총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실무협의회장은 의안을 취합하고 검토의견서를 붙여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의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실무협의회원은 협의회 임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사항) ①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회원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임원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인구소멸위기 대응에 영향을 주는 국가정책에 대한 논의 및 정책 건의사항

2. 당면한 공동현안에 관한 의견 집약 및 조사 연구사업

3. 사무국의 운영경비, 인건비, 실비보상비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원회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협의회 사무국장은 총회 및 임원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2조(의안 및 정족수) ①회원은 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한다.

②의안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 회원은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무 국

제13조(사무국)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필요시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입안 건의
2. 유관기관과의 협의
3.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 관리
4. 회의계획 수립, 회의자료 작성 및 통보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15조(자문위원) ①협의회의 주요 의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관련기관·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재정 및 기타

제16조(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시·군·구의 부담금
2. 특별부담금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4. 기타수입

제17조(부담금) ①부담금은 협의회 총회에서 정하고,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②특별부담금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사무국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그때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사무의 인계)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집행 잔액을 차기 회장에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회칙 개정) 협회 회칙의 개정은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보칙) 이 회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회
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인준된 임원의 임기는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창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지난 2021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된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인구감소문제를 공동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창립한다.

지난 20여년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어 인구감소문제가 국가 존립마저 위협하는 지금, 이제는 인구감소문제를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과 실행으로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펼쳐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소멸을 극복하고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인구감소지역으로서 행정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치의 힘을 키운다.

하나.

우리는 국가균형발전 도모 및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인구감소지역간 연대와 협력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

하나.

우리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제도혁신, 정책반영 및 예산지원 등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관철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3. 9. 25.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일동

첨부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가입 지방자치단체 현황

□ 협의회 가입 지방자치단체 수 : 89개 지역

시·도 (광역)	시·군·구 (기초)	비 고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3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3
인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	가평군, 연천군	2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12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6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9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0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16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5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

제5기 진도군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2023-131
----------	----------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 진 도 군 수

1.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에 의거,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개 요

- 수립방향
 - 제5기 계획 틀을 유지하되, 사업(과업) 추진의 구체성과 실행력 제고
 - 지역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사회보장 대표 계획으로서의 역할 정립
- 목 표: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혁신 진도! 군민 모두에게 살기좋은 진도
- 구 성: 2개 전략체계 / 9대 전략, 44개 세부사업(과업)(중점 18개)

3. 주요내용

- 군 자체 사업 중심 사회보장 정책(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및 지역 균형발전과 군정 발전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노력(지역 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구분하여 제시

-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체계: 5대 전략, 28개 세부사업(중점 14개)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4대 전략, 8개 대표과업, 16개 세부과업

4. 세부 내역 : 첨 부

5. 관련법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

6. 제5기 진도군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첨 부

주요내용

[제5기('23~'26) 진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목표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혁신 진도! 군민 모두에게 살기 좋은 진도!

추진전략

①복지혁신 ②돌봄혁신 ③경제혁신 ④교육혁신 ⑤건강혁신

세부사업

● 주민복지과(15개 사업)

- ◆ 희망복지 지원 활성화
-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 ◆ 진도참사랑 장애인 목욕장 운영
- ◆ 장애인복지시설 여가 활동공간 확충
- ◆ 찾아가는 이동 목욕서비스
-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 복지기동대 운영 지원
- ◆ 부적정 수급예방 홍보
- ◆ 복지급여 적정성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 ◆ 찾아가는 군민행복서비스 운영(행복버스)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강화
-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 ◆ 읍·면 나눔문화복지사업 운영 지원

세부사업

● 가족행복과(11개 사업)

- ◆ 다문화가족 교류공간 확보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활성화
- ◆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 다양한 여성프로그램 발굴 지원
- ◆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 다문화가족 자녀 선호 교육프로그램 운영
- ◆ 국공립 보육시설(어린이집) 지원 및 확충
-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 ◆ 청소년 꿈키움센터(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 ◆ 학생전용 스터니카페 운영

● 인구정책실(2개 사업)

- ◆ 청년지원센터 확장 이전
- ◆ 공공일자리 제공

● 총무과(3개 사업)

- ◆ 북한이탈주민 가정 정착 지원 사업
- ◆ 인재육성장학금 수혜자 확대 및 장학금 상향 지급
- ◆ 교육경비 지원

● 안전생활지원과(2개 사업)

- ◆ 장애인 콜택시 증차
- ◆ 전 지역 학생 100원버스 실현

● 문화예술체육과(1개 사업)

- ◆ 게이트볼, 파크골프 지원 확대

세부사업

● 보건소(6개 사업)

- ◆ 출산장려금 지급방법 개선 및 인상
- ◆ 우리마을 전담주치의제 운영
- ◆ 어르신 건강체조 확대
- ◆ 저출산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 ◆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 운영
- ◆ 관내병원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

실현과제

- 주민력 강화를 통한 지역 돌봄 체계 구축
- 장애인이 포용적 복지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보육서비스 강화
-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교육 및 일자리 제공

【전략체계1.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세부사업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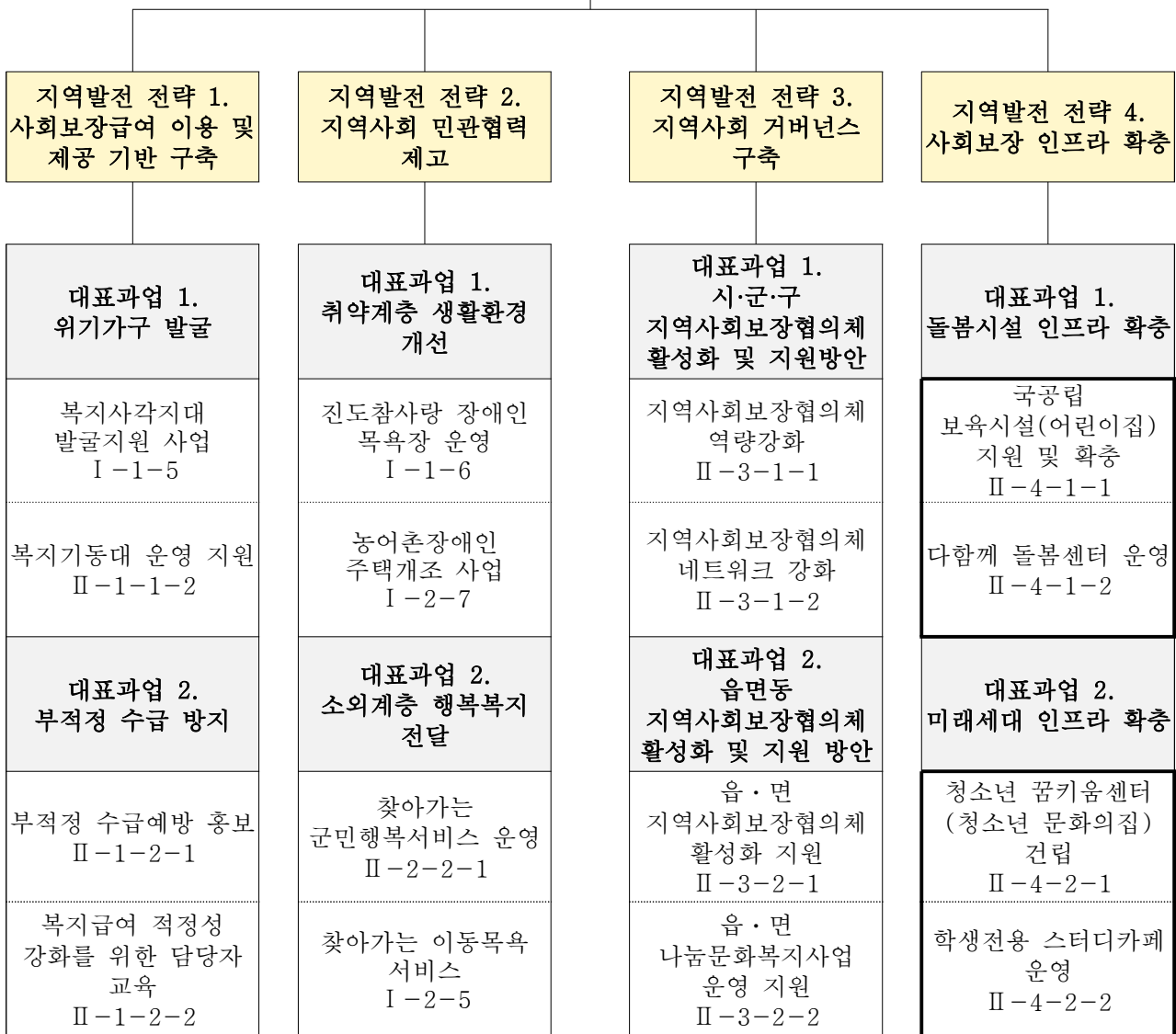
**목표: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혁신 진도
군민 모두에게 살기 좋은 진도!**



【전략체계2.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세부과업 목록】

목표: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혁신 진도
 군민 모두에게 살기 좋은 진도!

II.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 계획

□ 총괄현황 : 9대 추진전략, 44개 세부사업(18개 중점추진사업)

I.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5대 추진전략, 14개 중점추진사업, 28개 세부사업

II.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4대 추진전략, 8개 대표과업, 16개 세부사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 추진 사업 여부 (○,×)	민관 협력 사업 여부 (○,×)	5기 신규 사업 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성과지표명 (단위)	'23년 목표	'24년 목표	'23년예산	'24년예산
I.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군민과 소통! 복지혁신					세부사업 목표달성률(%)	85	90		
I-1-1	장애인 콜택시 증차	○	X	○	장애인콜택시 증차 (대)	5	완료	272	완료
I-1-2	출산장려금 지급방법 개선 및 인상	○	X	○	연도별 출산장려금 등 지급 실적(건)	480	480	520	770
I-1-3	다문화가족 교류공간 확보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X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상담프로그램 실적(명)	287	295	39	40
I-1-4	희망복지 지원 활성화	X	○	X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실적(건)	3,500	3,500	15	15
I-1-5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X	○	X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건)	900	950	-	-
I-1-6	진도참사랑 장애인 목욕장 운영	X	○	X	참사랑목욕장 이용 실적(명)	1,000	1,000	51	52
I-1-7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X	X	○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및 다문화 체험 축제 참석인원(명)	309	318	10	10
사회보장 전략 1. 군민과 우선! 돌봄혁신					세부사업 목표달성률(%)	85	90		
I-2-1	장애인복지시 설 여가 활동공간 확충	○	X	○	장애인복지시설 여가 활동 프로그램 참여 실적(명)	500	500	5	5
I-2-2	다양한 여성프로그램 발굴 지원	○	X	○	프로그램 참여 인원(명)	250	300	316	326
I-2-3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	X	○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실적(명)	1,434	1,477	148	153
I-2-4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X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실적(명)	156	156	107	107
I-2-5	찾아가는 이동 목욕서비스	X	○	X	방문목욕 서비스 실적(건)	950	950	15	15
I-2-6	북한이탈주민 가정 정착 지원 사업	X	X	X	정착지원금 지원 실적(가구)	1	10	2	20
I-2-7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X	○	X	주거환경 개선 실적(가구)	16	17	61	65

사업 번호	사업명	중점 추진 사업 여부 (○,×)	민관 협력 사업 여부 (○,×)	5기 신규 사업 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성과지표명 (단위)	'23년 목표	'24년 목표	'23년예산	'24년예산
I. 지자체 사회복지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3. 군민에 의한! 경제혁신					세부사업 목표달성률(%)	85	90		
I-3-1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X	○	장애인일자리 지원 실적(명)	62	64	770	785
I-3-2	청년지원센터 확장 이전	○	X	○	청년센터 이용객(명)	1,500	1,700	301	402
I-3-3	공공일자리 제공	X	X	X	참여자 수(명)	70	70	335	343
I-3-4	노인일자리 및 지원사업 추진 활성화	X	X	X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실적(명)	2,985	3,085	10,097	10,097
사회보장 전략 4. 군민이 미래! 교육혁신					세부사업 목표달성률(%)	85	90		
I-4-1	다문화가족 자녀 선호 교육프로그램 운영	○	X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 참여 실적(명)	287	295	142	146
I-4-2	전지역 학생 100원 버스 실현	○	X	○	100원 버스 운영 실적(대)	18	18	470	470
I-4-3	인재육성장학 금 수혜장 확대 및 장학금 상향 지급	○	X	○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실적(명)	500	500	500	500
I-4-4	교육경비 지원	X	X	X	프로그램 참여 실적(명)	200	200	500	500
사회보장 전략 5. 군민이 주인! 건강혁신					세부사업 목표달성률(%)	85	90		
I-5-1	우리마을 전담주치의제 운영	○	X	○	내부 사업평가 및 대상자 만족도 조사(%)	67	70	40	50
I-5-2	찾아가는 물리 치료센터 운영	○	X	○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 실적(건)	50	50	450	40
I-5-3	어르신 건강체조 확대	X	X	X	건강체조사업 참여 경로당 수(개소)	55	60	150	150
I-5-4	관내 병원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	X	X	X	의료기관 인공신장실 이용만족도 조사 (%)	50	60	402	403
I-5-5	게이트볼, 파크골프 지원 확대	X	X	X	사업예산 집행률 (%)	50	60	330	50
I-5-6	저출산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의료 서비스 지원	X	○	X	연도별 목표 달성률 (%)	90	90	200	200

사업 번호	사업명	중점 추진 사업 여부 (○,×)	민관 협력 사업 여부 (○,×)	5기 신규 사업 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성과지표명 (단위)	'23년 목표	'24년 목표	'23년예산	'24년예산
II.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세부사업 목표달성률(%)	85	90		
I-1-5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X	○	X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건)	900	950	-	-
II-1-1-2	복지기동대 운영 지원	X	X	○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 실적(건)	238	238	118	118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세부사업 목표달성률(%)	85	90		
II-1-2-1	부적정 수급예방 홍보	X	X	○	홍보활동 실적(건)	3	3	-	-
II-1-2-2	복지급여 적정성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X	X	○	교육 실적(회)	2	2	-	-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대표과업 1.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					세부사업 목표달성률(%)	85	90		
I-1-6	진도참사랑 장애인 목욕장 운영	X	○	X	참사람목욕장 이용 실적(명)	1,000	1,000	51	52
I-2-7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X	○	X	주거환경 개선 실적(가구)	16	17	61	65
대표과업 2. 소외계층 행복복지 전달					세부사업 목표달성률(%)	85	90		
II-2-2-1	찾아가는 군민행복서비스 운영	X	○	○	방문마을 및 서비스 제공 실적(회)	30	30	-	-
I-2-5	찾아가는 이동 목욕서비스	X	○	X	방문목욕 서비스 실적(건)	950	950	15	15

사업 번호	사업명	중점 추진 사업 여부 (○,×)	민관 협력 사업 여부 (○,×)	5기 신규 사업 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성과지표명 (단위)	'23년 목표	'24년 목표	'23년예산	'24년예산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세부사업 목표달성률(%)					85	90			
II-3 -1-1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역량강화	X	X	○	역량강화 교육 실적(회)	2	2	-	-
II-3 -1-2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네트워크 강화	X	X	○	네트워크 강화 추진 실적(건)	2	2	2	2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세부사업 목표달성률(%)					85	90			
II-3 -2-1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X	○	○	회의개최 및 발굴 실적(회)	30	30	21	21
II-3 -2-2	읍·면 나눔문화복지사 업 운영 지원	X	○	○	읍·면별 지원 실적(회)	30	30	-	-
지역발전 전략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지원									
대표과업 1. 돌봄시설 인프라 확충									
세부사업 목표달성률(%)					85	90			
II-4 -1-1	국공립 보육 시설(어린이 집) 지원 및 확충	○	X	○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예산 집행률 (%)	90	90	2,477	2,552
II-4 -1-2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	○	○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실적(명)	20	20	89	92
대표과업 2. 미래세대 인프라 확충									
세부사업 목표달성률(%)					85	90			
II-4 -2-1	청소년 꿈키움 센터(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	X	○	청소년 꿈 키움센터 공정률(%)	70	-	2,800	240
					청소년 꿈 키움 센터 이용 실적(명)	-	2,818		
II-4 -2-2	학생전용 스터디카페 운영	○	X	○	청소년 꿈 키움센터 공정률(%)	70	-	30	35
					학생 전용 스터디카페 이용 실적(명)	-	120		

2) 부서별 세부사업(과업) 관리체계

□ 총괄현황 : 8개 과, 40개 세부사업

실	국	과	세부사업(과업)명	비고	
-	본청	주민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1-4. 희망복지 지원 활성화 • I-1-5.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 I-1-6. 진도참사랑 장애인 목욕장 운영 • I-2-1. 장애인복지시설 여가 활동공간 확충 • I-2-5. 찾아가는 이동 목욕서비스 • I-2-7.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I-3-1.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II-1-1-2. 복지기동대 운영 지원 • II-1-2-1. 부적정 수급예방 홍보 • II-1-2-2. 복지급여 적정성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 II-2-2-1. 찾아가는 군민행복서비스 운영 • II-3-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 II-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강화 • II-3-2-1.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 II-3-2-2. 읍·면 나눔문화복지사업 운영 지원 	-	
		가족행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1-3. 다문화가족 교류공간 확보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I-3-4. 노인일자리 및 지원사업 추진 활성화 • I-1-7.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I-2-2. 다양한 여성프로그램 발굴 지원 • I-2-3.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 I-2-4.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I-4-1. 다문화가족 자년 선호 교육프로그램 운영 • II-4-1-1. 국공립 보육시설(어린이집) 지원 및 확충 • II-4-1-2.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 II-4-2-1. 청소년 꿈키움센터(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 II-4-2-2. 학생전용 스터디카페 운영 	-	
		인구정책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3-2. 청년지원센터 확장 이전 • I-3-3. 공공일자리 제공 	-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2-6. 북한이탈주민 가정 정착 지원 사업 • I-4-3. 인재육성장학금 수혜자 확대 및 장학금 상향 지급 • I-4-4. 교육경비 지원 	-	
		안전생활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1-1. 장애인 콜택시 증차 • I-4-2. 전 지역 학생 100원 버스 실현 	-	
		문화예술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5-5. 게이트볼, 파크골프 지원 확대 	-	
		직속기관	보건소 건강증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1-2. 출산장려금 지급방법 개선 및 인상 • I-5-1. 우리마을 전담주치의제 운영 • I-5-3. 어르신 건강체조 확대 • I-5-6. 저출산 인국감소 극복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
			보건소 보건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5-2.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 운영 • I-5-4. 관내 병원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 	-